

WiBro 서비스 이용약관

SK 텔레콤 주식회사

- 목 차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약관의 적용
- 제3조 서비스 제공지역

제 2 장 계약체결

- 제4조 계약의 성립
- 제5조 ID부여 및 변경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제7조 이용계약 등록 사항의 증명·열람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8조 회사의 의무
- 제9조 고객의 의무

제 4 장 계약사항 변경 · 해지 등

-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제11조 이용정지
- 제12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 제13조 해지

제 5 장 요금 등

- 제14조 요금 등의 종류
- 제15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제16조 체납요금 징수 등
- 제1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18조 요금 등의 반환
- 제19조 할부판매

제 6 장 손해배상

- 제2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 7 장 약정보조금 등

- 제21조 약정기간 설정
- 제22조 보조금 지급
- 제23조 보조금의 지급 제외 대상
- 제24조 위약금 납부 의무
- 제25조 위약금 면제
- 제26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부 칙

별표 1 - 요금표

별표 2 - 구비서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WiBro 서비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WiBro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약관의 적용)

- ① WiBro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서비스 제공지역)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가능지역을 홈페이지(www.e-station.com)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공지된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내에서도 서비스 특성상 건물 및 인공 지형물 등에 의해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제 1 항에 공지된 이외 지역 또는 공지된 지역내의 음영지역으로 이동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계약의 성립)

- ① WiBro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계약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② 고객이 WiBro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 계약서(정·부분)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분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 ③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ID 부여 및 변경)

- ① 회사는 타 이용고객의 ID 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WiBro 서비스 ID 체계에 부합되는 경우 고객이 신청한 ID 를 부여합니다.
- ②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제 1 항에서 부여한 ID 를 변경할 수 있으며, ID 변경시에는 변경예정일 30 일전까지 ID 의 변경사유, 변경예정 ID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불법스팸, 명의도용 등 부정적 사용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제한, 해지 또는 법적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4. WiBro 기술표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단말기나 UICC 카드를 구입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 7 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WiBro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에 관한 사항,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 3 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위해 WiBro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 등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또는 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고객이 사용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단문메세지 또는 e-Mail 등으로 월 2 회 이상 이용요금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로 인해 고객이 통보 받지 못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고객이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통보하지 않습니다.

- ⑧ 회사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SMS, 이메일 또는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회사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이 변경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변경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WiBro 서비스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객이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말기에 대한 신규가입, 단말기 변경, 이용계약사항 열람, 사용내역조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WiBro 서비스를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용 또는 Virus 유포, 불법스팸발송, 지적재산권침해 등 부적절한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고객은 본인명의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고객은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여 복수 장비에서 사용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⑧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 10 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① 고객은 단말기 변경, 명의변경 등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은 방문이외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11 조(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 8 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 회 이상 미납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금액이상을 미납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 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3. 전파법 제 19 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명의도용이 우려되는 경우
 5.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6.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1. 3 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는 경우 (단, 이 경우는 고객 고지 7 일 후 이용정지)
- ② 회사는 제 8 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 일전까지 전화, e-mail, 단문메세지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 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2 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에 3 개월 범위내에서 년 2 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제 2 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7 일전까지 고객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일시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해지)

-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의 경우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임을 확인할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 회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제11조 1항 11호의 이용정지 사유로 서비스가 정지된 후 14일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 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가입비를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 는 이용약관 제 16 조(요금등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지이후 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후 6 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번호, (해지)WiBro 서비스 ID,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따라 해지후 5 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제 5 장 요금 등

제 14 조(요금 등의 종류)

-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②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 합니다.
- ③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 단, 이용약관에 요금부과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 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제 15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 16 조(체납요금 징수 등)

-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17 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8 조(요금 등의 반환)

-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 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할부판매)

회사는 24개월 이하의 할부판매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제 20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고객의 단말기 또는 단말기와 연결된 장치의 불량으로 인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니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 제공하기 불가능한 경우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 21 조(약정기간 설정)

-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 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제 21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⑤ 미성년자가 제 1 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3 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① 제 2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제 24 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 = (변경 전 약정금액 - 변경 후 약정금액) ×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 단,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을 유통망에 게시합니다) 및 조건 내에서 결정되며 대리점별로 5 만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25 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 24 조 제 1 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률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 위약금 면제

- 나.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위약금 30% 이내에서 감면
- 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감면없음
-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별표 2 에 정의된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tworld.co.kr),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0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